전북거점형 양성평등센터 운영규칙

제 정 2022. 05. 25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여성가족부 및 전라북도 보조사업에 따른 운영위탁 사업인 전북 거점형 양성평등센터(이하 “센터”)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칙은 센터에 한하여 적용한다.

제3조(사업) 센터는 여성가족부의 승인을 받아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성주류화 제도 지원
2. 성평등 의식·문화 확산
3. 지역 특성화 사업
4. 그 밖의 전라북도 지역 성주류화와 성평등 문화 확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4조(운영원칙) 센터의 사업계획 및 예산 편성 등 운영에 관해서는 여성가족부의 성별영향평가센터 및 양성평등센터의 운영지침에 따른다.

제2장 조직 및 인력 관리

제5조(기구 및 정원) ①전북 거점형 양성평등센터는 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에 둔다.

②전북 거점형 양성평등센터장(이하 “센터장” 이라 한다) 산하에 팀을 둘 수 있으며, 센터장의 기구와 정원은 〔별표 1, 2〕와 같다.

제6조(직원의 구분) 센터의 직원은 센터장, 전문인력으로 구성한다.

제7조(센터장) ①센터장은 공개모집을 거쳐 원장이 임명한다. 임용자격은 〔별표 3〕과 같다.

②센터장의 인사, 복무, 징계,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의 규정과 지침에 따른다.

제8조(전문인력) ①센터 소속의 전문인력은 공개모집을 거쳐 원장이 임명한다. 임용자격은 〔별표 3〕과 같다.

②전문인력의 인사, 복무, 징계,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의 규정과 지침에 따른다.

제9조(직무대리) 센터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여성정책연구소장과 협의하여 원장이 직무대행자를 정한다.

제10조(업무분장) 센터의 분장업무에 대하여는 여성정책연구소장과 협의하여 센터장이 정한다.

제3장 보 수

제11조(연봉계약) 센터 직원의 연봉계약은 여성가족부의 성별영향평가센터 및 양성평등센터운영 지침에 의거하여 원장이 체결한다.

제12조(연봉산정 방법 등) 센터 직원의 연봉 및 각종 수당 등은 여성가족부의 성별영향평가센터 및 양성평등센터 운영지침에 따른다.

제4장 업무분장

제13조 센터의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.

1. 성주류화 제도 지원
2. 성평등 의식·문화 확산
3. 지역 특성화 사업
4. 그 밖에 전라북도 및 여성정책연구소 운영위원회에서 지역 성주류화와 성평등 문화 확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5장 사무관리

제14조(문서관리) ①센터의 문서는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.

② 원장이 위임한 사항에 대해 여성정책연구소장이 결재한다. 다만 필요시 여성정책연구소장의 위임사항에 대해 센터장이 결재한다.

제15조(인장관리) 센터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장을 비치・사용・관리한다.

제6장 재무 및 시설관리

제16조(사업계획) 센터의 사업계획은 전라북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17조(예산 및 결산) ① 센터의 예산 및 회계처리는 여성가족부의 성별영향평가센터 및 양성평등센터운영 지침에 따른다.

② 사업예산 및 재무회계 업무처리를 위해 수입지출을 담당하는 직원은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한다.

제18조(시설 · 기자재의 활용) 센터의 시설 및 기자재 등은 연구원과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.

제7장 보 칙

제19조(제 규정과의 관계) 이 규칙은 여성가족부의 성별영향평가센터 및 양성평등센터 지침을 제외하고는 연구원의 제 규정, 규칙 및 지침을 준용한다.

부 칙

①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②**제2조(경과규정)** 전북 거점형 양성평등센터장의 최초 임용 전까지는 여성정책연구소장이 센터장을 대행한다.

〔별표 1〕

기 구 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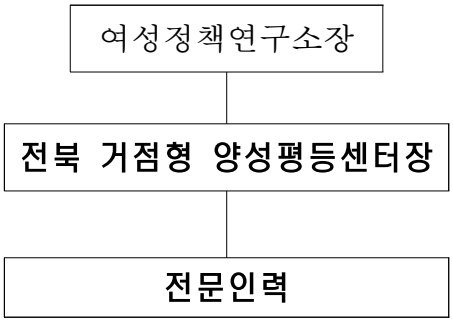

〔별표 2〕

정 원 표

직 별	직 급	정 원
계		5
전북 거점형 양성평등센터	센터장	1
	전문인력	4

〔별표 3〕

전북 거점형 양성평등센터 직원의 자격요건

구 분	자 격 요 건
센터장	○ 성별 영향평가, 성인지예산 또는 여성정책 관련 연구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혹은 관련분야 5년 이상 연구·실무 경력자
전문 인력	○ 여성정책, 교육학, 사회학 등 인문·사회과학 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* 관련분야 전공, 연구·실무 경력자 우선 채용